안전·공공질서

01

럼피스킨병 질병등급 하향

과도한 가축처분 및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 규제 완화

추진부서 |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71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개선배경

- 럼피스킨병※(LSD)은 폐사율이 낮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구제역 · AI 등과 동일한 강도로(살처분, 이동제한, 발생농장 반경 5km 방역대 설정 및 정밀검사 등)의 방역조치 적용

  ※ 럼피스킨 : 흡혈 곤충 매개 바이러스성 전염병. 고열과 함께 피부에 혹(결절) 형성



- 럼피스킨 발생시 살처분 · 방역대 이동제한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매몰비용 등 예산 지출, 농가 경제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져 축산업계의 부담 심화

  ※ 2023~2024년 살처분 보상금 : 전국 6,772마리 283억원(경기도 2,060마리 80억원)

▶ **럼피스킨 발생현황 [`23. 10월(최초발생) ~ `24. 10월]**

(전국) 131건

(**경기31**, 인천9, 대구2, 충북8, 충남43, 전북14, 전남5, 경북4, 경남1, 강원14)

(경기도) 31건

(평택5, 김포4, 화성7, 수원1, 연천3, 파주2, 포천3, 여주2, 시흥1, 안성2, 이천1)

- 백신접종에 의한 일시적 부작용(유량저하, 식욕부진 등)은 있으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1회 접종으로 1년간 면역형성 유지)이며 해외(아프리카 · 중동 등)유행주와 달리 국내 발생 사례에서는 폐사 사례가 없었음

- 그간 국내 방역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장 수용성 제고와 질병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 럼피스킨병 질병등급 하향(1종→2종)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개선 전	개선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 ---------------------------- **큐열, 럼피스킨병** ------------------------------------

〈현행 법령상 가축전염병 등급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비교〉

방역조치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19조제1항제2호 발생농장(역학포함)의 사람 이동제한	**○(가능)**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9조제1항제3호 방역대 내 이동제한, 소독조치	○(가능) *방역대(관리 · 보호 · 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등 조치	○(가능) *방역대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역학관련 이동제한, 매개체 관련 이동제한	○(가능)	○(가능)	○(가능)
제20조제1항 본문 발생 농장 살처분	○(의무) –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고시 위험도평가 등에 따라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여부 결정**	○(의무) –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고시 등에 따라 **주로 양성축 살처분** 실시	×(해당규정 없음)
제20조제1항 단서 예방적 살처분	**○(가능)**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21조제1항 도태 권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에 대해 도축장 출하 권고 가능	○(가능)	○(가능)	×(해당규정 없음)

추진과정

● 「축산 · 동물복지 분야 제도개선 건의서」를 통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럼피스킨을 제2종으로 하향토록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실) 방문 건의(2024. 10. 4.) 및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서 전달

▶ 「축산 · 동물복지 분야 제도개선 건의서」 주요 내용
- 럼피스킨 국내발생 분석을 통한 질병위험도 재평가 및 연구용역 실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개정(제1종→제2종 하향)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 양성축 살처분 유예 위험도 평가결과」(2025. 2. 12.)를 바탕으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 마련 발표 및 경기도 · 농림 축산식품부 국회 방문설명(2025. 2. 24.)

▶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 주요 내용
- 정책전환 : 럼피스킨 관리수준 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25년중) 및 법 개정
- 관리대책 : 살처분 중심 대응에서 백신접종 및 농가 자율 방역체계 구축('26년~)

● 국회 의안번호 제22085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2. 28.)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및 소위 회부(2025. 3. 4.) 법안 심사중이며 검토보고(2025. 4. 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 정부 주도 관리에서 농가 자율관리로 전환하여 축산농가 부담 경감

개선효과

● 정책적 효과
- 국가별 발생양상 및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정책의 과학적 합리성 제고
- 가축전염병 정부주도 탈피 농가 자율방역체계 기반 마련
-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선례 구축으로 향후 신종질병 관리체계 유연성 확보
- 지방정부의 현장 건의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및 국회 입법으로 직접 이어진 성공적인 협업 모델 제시

● 경제 · 사회적 효과
- 과도한 살처분 조치로 인한 지방정부 살처분비용 절감 및 농가 피해 최소화로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안정에 기여

▶ 국내 2023~2024년 살처분 두수 및 보상금 현황
- 전국 6,772마리 283억원
  (경기도 2,060마리 80억원)



Interview

과학적 위험도 기반, 과도한 방역 규제 완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최옥봉 ☎031-8030-3471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국내 발생사례를 보면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 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 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는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등으로 인한 예산 지출 및 농가의 경제적 피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6,772마리를 살처분하며 283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질병 특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산·동물복지 분야 제도개선 건의서」를 통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럼피스킨병의 질병 등급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하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관리수준을 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하고, 살처분 중심 대응에서 백신 접종 및 농가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농가 자율관리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으로 얻게 될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선, 과도한 살처분 조치로 인한 지방정부의 살처분 비용이 절감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국가별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정책의 과학적 합리성이 높아지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난 농가 자율방역체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현장 건의가 중앙정부 정책과 입법으로 직접 이어진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신종 질병 관리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끊임없이 찾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